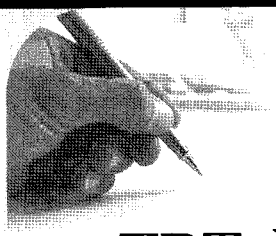

TBT 중앙사무국 1주년 보고서(2)

이 용 현 연구관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

II. FTA/TBT

라. 한-미국 FTA

한-미 양국 간의 FTA협상은 '06.6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8차례의 공식협상과 고위급협상 및 통상장관 회의를 거쳐 '07.4.2일 최종 타결되었다.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라고 할 수 있다.

TBT 챕터에서는 우선 '한-미 TBT 위원회'를 설치하여 표준 및 기술규정에 대한 상호 협력사항과 양국간에 발생하는 기술무역장벽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나아가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개정시 상대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조항을 규정하였으며, TBT 협정문에 기술규정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TBT 협정의 적용범위에 사실상 미국 측의 주정부를 포함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제품인증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업계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제품인증서로 미국시장에 곧바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는 제1차 협상('06.03, 뉴델리)을 시작으로 2년 7개월간, 공식협상 12회 및 회기간 협상 2회를 통해 '08.9.25일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법률검토를 통해 '09.8월 정식 서명되었다. 한-인도 CEPA 협상에서 TBT 분야는 상품분과에서 다루어졌는데, TBT 분야 논의사항은 우리 측에 특별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 없어 인도 측 관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최종 타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양국간에 제기되는 무역기술장벽 이슈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원활한 협정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공동작업반 설치를 합의하였고, 협정 발효 후 1년이내에 전기전자 및 통신기기 분야의 상호인정협정(MRA)을 맺기 위한 협의를 추진키로 하였다.

2.2 진행중인 FTA

〈진행중인 FTA 현황('09. 12월기준)〉

구분	일본	캐나다	멕시코	GCC	페루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1차	'03. 12	'05. 07	'07. 12	'08. 06	'09. 03	'09. 05	'09. 06	-
진행	6차 ('04. 11)	13차 ('08. 03)	2차 ('08. 06)	3차 ('09. 07)	4차 ('09. 10)	4차 ('10. 03)	3차 ('09. 12)	2차 ('10. 03)
기술표준 분과 구성 여부	○	○	○	×	○	○	○	○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은 현재 7개가 있는데 일본과의 협상은 6차 협상('04.11월)이후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협상은 각각 13차 및 2차가 진행되었는데 차기 협상 일자가 미정인 상태이다. GCC와의 기술표준분야 협상은 양측간 TBT 분야 현안사항이 많지 않아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페루와의 기술표준분야 협상도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협상은 각 측이 제안한 협정문 초안을 바탕으로 양측 입장을 반영한 통합협정문안을 작성하면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

III. TBT 애로사항 해결

3.1 미국 어린이용품 인증제도

3.1.1 미국 어린이용품 규제현황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는 '08년 8월 14일 통과된 '2008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에 근거해 '08년 11월 12일 이후 제조되는 12세 이하 어린이용품에 대한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어린이용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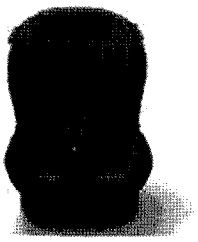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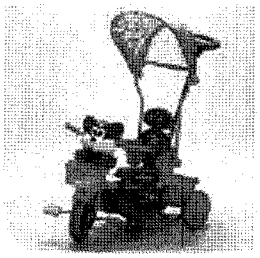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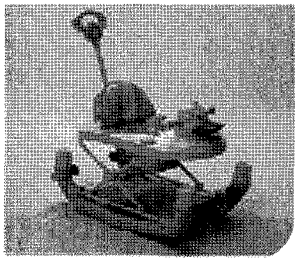

그 동안은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없이 수출이 가능했으나, '08년 11월 12일부터는 선적 전에 성적서와 인증서를 첨부하여 수출하여야 한다. 실제로 많은 수출업체가 미국 바이어로부터 인증서 첨부에 대한 내용을 통보를 받았다. 미국 CPSC는 어린이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자에게 제3자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근거로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과도기로서 제3자 시험기관 성적서의 의무적용은 일부에만 국한되고 향후의 적용 로드맵이 발표되어 있다.

가장 먼저 적용된 항목은 납 함유 페인트이며, 이는 '08년 12월 22일부터 CPSC에 등록된 제3자 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09년 2월 10일 부터는 어린이용품 전반에 납 성분 함유량을 600 ppm 이하로, '09년 8월 14일 부터는 300 ppm 이하로, '11년 8월 14일 부터는 100 ppm 이하로 규제한다. 납 함유 페인트에 이어 어린이 침대 및 노리개 젖꼭지는 '09년 1월, 작은 부품은 2월, 금속 장신구는 3월, 유아용 보행기 등은 6월부터 적용하였다. 그리고 '09년 9월부터는 모든 어린이용품에 대한 성적서 의무 첨부가 시행된다.

3.1.2 어린이용품 등 기술규제 전망

기술표준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섬유기술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SGS Testing Korea, FITI 시험연구원 등 6개 시험기관을 어린이용품의 대미 수출을 위한 적합성 평가기관으로 인정하였다. 이들 기관은 CPSC의 등록을 거쳐 공식시험기관으로 승인되었다. 따라서 어린이용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일정을 고려해 상기 6개 시험기관에 시험 분석을 의뢰하고, 선적전에 시험성적서와 적합성 인증서를 작성, 첨부해야 한다.

현재 완구류는 국내 60여 업체가 약 2천만 달러 상당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등의 공장을 통한 수출량은 이의 수십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완구 이외에도 어린이용 신발이나 의류, 장신구, 유모차 등 모든 제품이 납 함유 페인트 인증대상이어서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기술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번 미국의 어린이용품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를 시험대로 삼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타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3.2 중국 정보보안 제품

3.2.1 중국 정보보안기기 강제인증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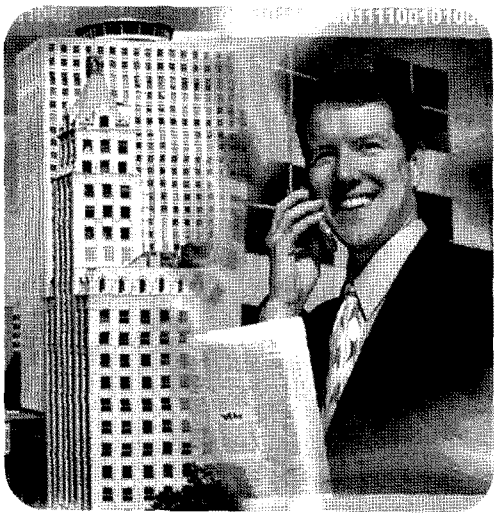

중국은 품목별로 각각 운영되던 공산품에 대한 강제 검사제도를 통합하여 '03년부터 전자파 · 통신 · 안전 등과 관련된 132개 품목(자동차 · 냉장고 · 생활가전 · 전기제품 등)에 대해 강제인증제도(China's Compulsory Certification)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07년 8월 WTO를 통해 자국내에서 유통되는 13개 정보보안제품(해외제품 포함)을 대상으로 '강제인증제도(ISCCC)'를 '09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각국에 통보하여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은 동 제도가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기술규제이며, 기업에 부담을 주고 기업의 기술정보 유출 등 우려가 있음을 들어 중국정부에게 철회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WTO TBT 위원회 및 중국과의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통해서 국내 기업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여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의 동 규제기관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는 당초 제도의 시행 예정일인 '09년 5월 1일을 '10년 5월 1일로 1년 연기하고, 규제대상도 정부 조달품목으로 한정한다고 '09년 4월 29일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동 인증제도의 시행이 유효하며, 무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정부는 국가정보의 보안성 확보를 제도 시행의 목적이라 발표하고 있으나, 중국의 전반적인 제도 시행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정부조달로 한정하겠다는 내용도 현재까지 명확한 시행방침이 없는 상태이다.

3.2.2 세계 각국의 대응현황

미국은 중국의 인증제도 시행의 규제적용대상을 정부조달품목으로 한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호한 부분에 대해 양자채널, WTO/TBT 위원회 및 EU, 일본, 한국과 공조를 통해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09년 5월 1일 일본 경산성 대신의 방미시에는 USTR 대표와 공동으로 중국측의 제도포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동 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관찰되는데, 일본은 '09년 4월 29일 중일 정상회담시 동 인증제도의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며, '09년 5월 4일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공동성명 발표도 일본측이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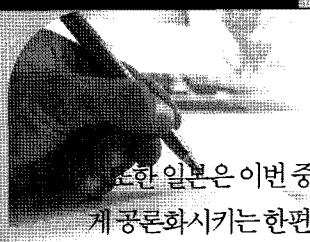

또한 일본은 이번 중국의 인증제도 시행에 대하여, '09년 4월 24일 주요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이 크게 공론화시키는 한편 관방장관도 직접 언급을 하는 등의 대응을 통해 매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3.2.3 국내 대응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제도시행계획 발표 직후부터 동 사안과 관련하여 안철수 연구소 등 국내의 정보보안제품 관련업계 및 기관을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총 4회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을 통해 상시 협력 및 공조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국제공조를 통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3국이 일본에서 공동 대응을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 TBT과장이 '09년 3월 방한하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장과 면담을 하였고, 이어 기술규제대응과장이 '09년 5월 미국을 방문하여 공조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일본과의 공조로는 지난해에 이어, '09년 3월 WTO/TBT 위원회 기간동안 관련 사항의 공조 대응을 위한 회의를 하였고, 최근 '09년 5.18일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이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국장과 한일간 지속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WTO/TBT 위원회에서 '08년 11월, '09년 3월, 및 '09년 6월 등 수차례에 걸쳐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에 대한 국내 업계의 우려표명을 하였고, 지속적으로 세계 각국과 정보교환 및 공동 대응을 하여왔다. 중국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대응으로는 '08년 11월 및 '09년 7월에 개최된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에서 중국 CNCA측에 아국 업계의 우려사항과 동 인증제도의 부당함을 강하게 표명하고 중국 정부측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는 기업대상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3.2.4 향후 대응현황

기술표준원에서는 동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업계 관계자들과 수시 대책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인증관련 내용 및 절차서 작성 배포, 인증대비 사전 준비,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으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측에서 정보보안 기능이 있는 디지털기기로 대상품목 확대 여부 및 정부조달로 국한하겠다고 발표한 후에도 국영기업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하여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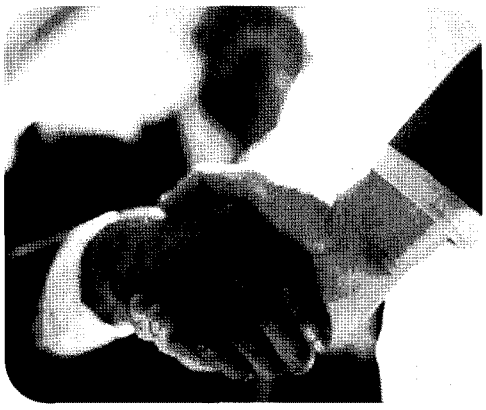

3.3 동남아 철강제품

3.3.1 동남아 철강제품 기술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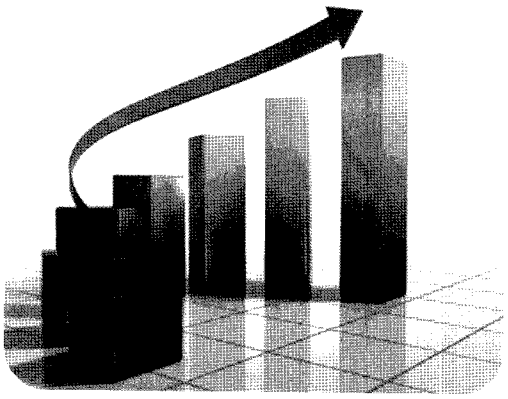

2009 년도에 들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에서는 철강재를 중심으로 공산품의 기술규제(TBT)를 도입했거나 강화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수입 쿼터, 덤핑조사 세이프가드 등 전통적인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해 왔는데 전통적인 조치는 축소 또는 철회하면서도 기술규제를 새롭게 도입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비기술적인 무역규제조치(NTB)는 축소하면서도, 기술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자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09.5.6부터 SNI(인도네시아표준)의 인증 의무화를, 말레이시아는 '09.8.1부터 MS(말레이시아표준)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8월 초에 '09.10.9로 연기) 태국은 '09.5.1부터 TIS(태국표준)인증 요건을 강화시켰으며, 인도는 IS(Indian Standard) 강제인증을 '09.2.5 시행하려던 것을 1년 연기('10년2월1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기업들은 의무인증 시행일 이전에 인증을 획득하고자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과도한 시료(샘플) 수량, 세부규정 미비에 기인한 중복된 자료제출 요구 및 인증지연으로 인하여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우리업계의 '08년도 철강재 수출규모는 인도네시아 3억$, 태국 15.1억$, 말레이시아 7.4억$로 인도 9.5억$로 총36억$ 수준이다. 과도한 시료 요구란 동일한 화학조성의 강판이라도 인증용 시료를 두께별로 모두 요구하는 것으로, KS에서는 최소 두께와 최대 두께의 2종 또는 대표 치수 1종의 시료로 인증이 되던 제품이 많게는 200~300종의 시료가 필요하게 되어, 인증 비용(냉연강판 25 ton Roll의 가격 1.5만$) 및 기간이 수배~수십배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3.3.2 동남아 철강제품 기술규제 대응현황

TBT 중앙사무국에서는 이들 국가 중 강제인증을 시행 중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3개국에 대해서 해당국 책임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지 대응활동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인도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10년 2월이므로 우선 현지 상무관 및 WTO/TBT회의 등을 통하여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현지 대응은 기존의 WTO/TBT 위원회에서의 다자 · 양자 회의를 통한 개선요구 또는 해당국과의 정례회의에서의 문제협의 방식이 갖는 의제의 포괄성, 의제의 담당기관으로의 전달에 따른 기간의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당사국의 상호 실정에 적합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신속히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술규제대응과장을 단장으로 주재국 상무관, 현지 지사대표(태국과의 협의시에는 외교통상부 무역규제대응팀 포함) 등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현지주재 업계 관계자를 만나 업계애로사항을 조사하는 한편, 상대국 정부부처의 실무 책임자를 면담하여 고위급 서한을 통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규제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09.8.21일 인도네시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와 표준화기관(BSN)과의 논의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MITI, SIRIM) 및 태국(TISI)의 책임자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금번 논의를 통하여 해당국과 우리나라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상호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즉, 이들 국가는 자국내에 유통되는 철강제품의 품질저하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해결이 필요하여 기술규제를 도입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또한 현재의 인증방법이 초래하는 수입가격의 인상 및 제품 공급지연에 따라 수입국 연관산업도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이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논의결과, 과도한 시료제출은 지양하고 기타 인증과정에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상호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즉 인증시 진행의 신속화, 비용의 절감 및 철강제품의 품질보증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철강재 인증경험을 이들 국가에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인증 대상제품의 확대 조치를 유보하고(인도네시아), 인증제도 보완을 위한 시행연기 및 인증제품의 재분류를(말레이시아) 추진하며, 표준 · 적합성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키로(인도네시아) 하였다.

철강재 인증경험 제공 프로그램은 해당국의 철강 인증담당공무원 등 관련자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KS 인증제도, 공장품질관리 등급제제도 등을 전수시키고 우리 철강회사의 KS인증심사에 참관하여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인지케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 세부내용을 성안 중이다. 금번 기술규제 현지 대응활동을 통하여 이상의 성과이외에도 철강재 인증시 품질이 열악한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우리제품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기타 공산품의 기술규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의 기술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09.5.6부터 열연강재(HR, PO)에 대하여 인도네시아규격을 획득한 제품만 수입토록 조치하였으며, '09.8월 말부터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냉연강판(자동차 및 가전제품용)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기술규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비기술규제도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시행 중인 비기술규제〉

구분	대상	내용	시행일	경과 / 전망
반덤핑 (AD)	HR, PO	덤핑관세 부과	조사중 ; 최종 판정 : '10.3예상	- 예상마진 : 0%(면제)
선적전 검사 (PSI)	철강재 전체	선적항에서 제품 샘플 검수	'09.7.26 ('09.4.1에서 연기)	- 자동차/가전/조선용 제외 ※ 제조업체의 직수입만 해당 - 수입자(상사, 코일센터)가 검사 대행기관을 통해 수검

인도네시아는 철강인증 시행 목적을 우수제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제도 구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수입 유통되는 철강제품 중 자동차나 가전에 이용되는 냉연강판 및 조선용으로 사용되는 열연후판 등의 고급품의 품질은 양호하나, 일반 강판 등의 저급품의 경우 수% 만이 SNI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등 철강재의 품질이 열악하여 이를 이용한 공산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철강인증시의 우리업계의 애로사항은 과도한 시료 요구, 현지 시험기관만을 이용함에 따른 소요기간의 장기화 이외에도 인증 제외대상인 자동차, 가전, 조선용이라고 하여도 중간 가공회사를 경유할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는 기존에 형강류에만 적용하던 말레이시아규격(MS)의 강제인증을 '09.8.1부터 철강제품 전체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관세, 수입허가 등의 비기술규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다.

〈말레이시아의 비기술규제 동향〉

항목	현행	수정안
관세율	50%	25%
면세 우대책	7대 산업에 적용	폐지
AP(수입허가)	수입시 사전 발급	폐지
국내산 사용의무	시행	의무 구매량 폐지

말레이시아가 관세율을 낮추고, 특정 산업분야의 면세우대, 수입허가 및 국내산 사용의무 폐지 등의 규제완화는 자유무역 정책을 향상시킨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견상의 완화 조치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MS강제인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무역규제 및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강제인증 확대 조치는 저급 철강재 수입에 의한 국내 관련 제품(사회기반시설, 건축물, 공산품 등)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철강재 표준 및 인증시행기준 등이 미비하여, 인증 시행시에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8월 초에는 강제인증 시행을 '09.10.9로 2개월 연기하였다. 한편 말레이시아인증기관(SIRIM)은 시료 수의 증가가 기관의 수입증가로 연결되므로 많은 시료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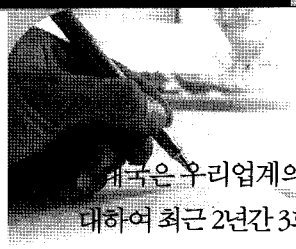

태국은 우리업계의 수출 비중이 높은 열연강재에 대하여 최근 2년간 3회에 걸친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09.5.1부터 태국규격 인증요건을 강화시켰다. 즉 기존에 일부 강제 인증품목에만 적용하던 TISI 인증을 건자재 20종, 전기용품 33종, 자동차 안전유리 등 기계류 15종, 기타 26종의 총 94종의 제품으로 확대하고 인증 심사항목을 기존의 5개 항목에서 부적합품의 관리 등 5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0개 항목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ISO9000 인증 업체에 허용하던 공장 방문평가 면제조항을 삭제하였다.

시료 과도요구와 관련 태국측은 2~3개의 시료만을 요구한다고 하였지만, 업계에서는 제품의 두께 등의 치수가 달라질 경우에는 신규로 인증을 요구한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태국 인증제도의 또 다른 애로점은 인증 취득을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POSCO 등 국내 제조업체가 인증 받은 제품이라 하여도 수입업체마다 인증을 위한 국내 제조업체의 실사를 하여야하며, 또 임의 수입업체가 철강재의 치수가 다른 제품을 추가할 때마다 신규 인증취득을 위해 국내 제조업체를 실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인증 방식에 따른 비용과 번거로움은 물론, 인증기간 동안의 수출 지연은 엄청난 규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는 철강재 수입 규제조치 중 NTB 분야의 관세, 비관세 철강재 수입규제와 병행하여 TBT분야의 BIS강제인증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인도의 NTB 분야에서의 주요 규제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인도의 철강재관련 NTB 규제 현황〉

구분	일자	대상	진행현황
HR License제 (열연강 수입허가제)	'08. 11. 21	HR	'09.10월 중 철회 소문
STS CR A/D (스테이넬스 냉연강 반덤핑)	'08. 11. 25	8개국	잠정 관세율 발표, 2차 공청회 준비 중
HR A/D (열연강 반덤핑)	'08. 11. 28	15개국	제소 철회('09.8.11)
HR Safeguard (열연강 세이프가드)	'09. 4. 23	19개국	공청회 준비중, 철회 소문
철강수입관세	'09. 6	판재류	5%로 유지 CEPA체결(HR, CR 8년내 0%)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의 열연강 수입허가제, 열연강 반덤핑, 열연강 세이프가드는 해제되었거나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철강관세의 경우, '08년 3월에 0%로 낮추어 졌다가 '08년9월에 5%로 부활되었

다. 이후 인도 철강업체는 관세율을 10%이상으로 올리라고 요구하였으나, '09년 6월 신회계년도 관세율을 현행대로 5%로 발표하였고, '09년8월에는 한 · 인도 CEPA 체결로 8년 이내 관세는 없애기로 되어 관세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 냉연판의 경우 반덤핑 조사가 '08년 11월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마진율 결정, 공청회 개최 등 후속절차를 밟고 있는데 제품범위와 피소자가 한정되어 있어, 제소자인 Jindal STS사의 의도대로 판정될 것이나 우리나라는 수출 경쟁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정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허가제 철회와 관련 반덤핑규제 대신 수입허가 발급여건의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 수입허가제의 철회여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인도의 NTB 규제 해제는 신정부의 구성, 철강수요회복의 영향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관련국의 반발 즉 무역규제 상대국의 보복조치 위협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통 인도에서는 정책이 시행 연기될 경우는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BIS 강제인증 조치는 그 시행일이 당초 '09.2.1에서 '10.2.1로 연기되었지만,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최근 일본회사는 물론 인도내의 여러 철강회사 들이 BIS인증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인도의 철강재 17종에 대한 BIS 강제인증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08.9.9 발표되었다. 그러나, 인증대상에 소비자보호와는 무관한 중간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인증시 인도 현지 시험기관만을 이용토록 하는 등 수입제한 및 자국산업 보호조치임이 명백하였다. TBT 중앙사무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본, 미국, EU 등과 공동 협력하여 WTO/TBT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한편 인도 표준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에 WTO/ TBT 협정 관련으로 동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해명과 시행연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러한 이의 제기로 인하여 인도는 1년간 시행을 연기한 상태이다. '09년 초부터 .우리 업계에서는 인도인증을 위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서류보완 요구로 인증 진행이 미진하여 '10년 2월 이전의 인증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 다음호에 계속